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의거,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 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.

※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-123호(2022.3.4.)는 본 고시로 대체함

2022년 경 상 남 **50천**소 **지사의**인

1. 기 간 : 2022. 3. 21.(월) 0시 ~ 2022. 4. 3.(일) 24시

2. 효 력: 2022. 3. 21.(월) 0시부터

<경과규정 등>

- 경상남도 고시 제2022-123호(2022.3.4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3.21.(월) 05시까지 유효
- 2022.3.21.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4.4.(월) 05시까지 유효
- 3. 주요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적용
 - 가. 적용대상

다중이용시설 (30종)

-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- 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실내체육시설 ▲목욕장업 ▲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▲ 식당·카페 ▲ 멀티방 ▲ PC방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-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
- ▲실외체육시설 ▲숙박시설 ▲키즈카페 ▲돌잔치 ▲전시회·박람회 ▲이·미용업
- ▲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학원 등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
- ▲마트·백화점 등 3,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▲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도서관
- ▲ 영화관·공연장

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

▲종교시설 ▲콜센터 ▲물류센터

나. 처분대상자

-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- 경남도 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와 주최자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
- 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고시 사항
- 라.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*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2, 붙임3, 붙임4, 붙임5 내용 확인

구분	주요 방역수칙			
공통 방역수칙				
마스크 착용	▶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			
기본방역수칙	 ▶ 방역수칙 게시·안내 ▶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▶ 일 1회 이상 소독 ★ 방역패스 및 출입자 명부관리 의무적용 잠정중단 및 임의적용 사항 삭제,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			
모임·행사 ·집회				
사적 모임	▶ 8명까지 모임 가능 < 적용제외 > ●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・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 ②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봄종사자를 의미)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 ⑤ 실내・외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			
기타 행사·모임	▶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 까지 가능 *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(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)			

구분	주요 방역수칙				
① 다중이용시설					
유흥시설 5종,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클럽·나이트) 콜라텍·무도장	 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 ※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 ※ 허가(신고) 받은 업종 불문, 사실상 유흥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				
노래(코인)연습장 (뮤비방)	 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 ※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(예:뮤비방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				
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, 경륜·경정·경마장	▶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는 23시까지, 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 ※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				
식당·카페 (홀덤펍)	 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※ 23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* (식당·카페) 23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 포함) 나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				
PC방, 멀티방 (홀덤게임장)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파티룸	 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 ★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- (마사지업소·안마소)「의료법」제82조 및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★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또는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				

구분	주요 방역수칙			
실내스포츠경기 (관람)장	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			
오락실	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 ※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▶ (밀집도) 제한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			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▶ (밀집도) 제한없음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			
실외체육시설	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★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			
전시회·박람회	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제한없음 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★ 단,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, 별도 지정 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			
국제회의·학술행사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제한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			
결혼식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			
돌잔치, 장례식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			
학원	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 ※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- (학원)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▶ (이용가능, 밀집도) 제한없음			

구분	주요 방역수칙				
	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				
	*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				
독서실, 스터디카페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				
	▶ (이용가능, 밀집도) 제한없음				
	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*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				
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				
도서관, 박물관미술관괴학관	→ (이용가능, 밀집도) 제한없음				
	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				
	*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				
백화점·대형마트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				
	▶ (이용가능, 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				
	▶ (운영시간) 23시까지				
	※ 23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				
	- (영화관·공연장) 23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익일 01시 초과 금지				
	▶ (밀집도)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				
영화관·공연장	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				
	*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(대학 부속시설 등「공연법」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				
	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				
	*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				
② 기타시설					
	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>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				
	▶ (밀집도) 수용인원 70%, 정규종교활동 외 종교행사는 모임행사				
	기준 적용하여 최대 299명까지 가능				
종교시설	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				
	▶ (기타)				
	- (소 모 임) 사적모임 (8명) 이내 가능 - (기 타)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,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				
	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				
콜센터·물류센터	▶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				

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
-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- 5.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또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2)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수 있습니다.

8.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시설명	담당부서(도)	연락처	비고
▶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 ▶ 단란주점 ▶ 헌팅포차 ▶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, 돌잔치	식품의약과	211-5024	
▶콜라텍	예방안전과	211-5414	
▶ 노래연습장 ▶ PC방 ▶ 오락실·멀티방 ▶ 영화관	문화예술과	211-4534	
▶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과	211-3354	
▶ 공연장	문화예술과	211-4544	
▶놀이공원, 워터파크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실내체육시설, 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)	체육지원과	211-4744	
▶ 결혼식장	가족지원과	211-5256	
▶장례식장	노인복지과	211-4873	
▶ 목욕업 ▶ 이·미용업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학원 ▶ 독서실 ▶ 스터디카페	통합교육추진단	211-3665	
▶ 마트·백화점 ▶ 백화점·대형마트	소상공인정책과	211-3434	
▶ 직업훈련기관	각 소관부서	-	
▶종교시설	문화예술과	211-4514	
▶ 노인요양시설	노인복지과	211-4875	
▶ 요양병원	식품의약과	211-5044	
▶ 정신병원	보건행정과	211-4935	
▶콜센터	노동정책과	211-3464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관광진흥법상)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공중위생법상)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어촌체험마을(민박)	섬어촌발전과	211-6173	
▶ 농어촌민박	농업정책과	211-6255	
▶ 농촌체험휴양마을	농업정책과	211-6254	

끝.